

청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553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55320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2003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5. 20.

판결선고 2022. 6. 10.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2003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7. 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청주시방법원 충주지원 2019. 7. 19. 접수 제263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는 2021.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제1심 법원은 2021. 1. 20. 피고의 주소지 '충주시 F'로 이 사건 소장을 송달하였고, 피고는 2021. 1. 22. 이를 직접 수령하면서 우편송달통지서의 영수인 란에 서명하였다.
- 3) 피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2021. 4. 2. 변론기일통지서, 2021. 5. 27. 변론기일통지서, 2021. 6. 22.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에게 각 송달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두 수령하였다.
- 4) 제1심 법원은 2021. 7.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하여 2021. 7. 3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21. 8. 17.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77세의 고령이어서 위 서류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재판에 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판결문은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직접 송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뿐만 아니라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까지 모두 직접 송달받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전혀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송진행 중이라는 사정조차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가 인지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77세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제1심 법원의 판결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21. 7. 30.로부터 항소제기기간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7.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판사 강현호, 판사 이종인

별지